#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51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정동영・이성윤・이정헌

최민희 • 허성무 • 김주영

장종태 • 박지원 • 김 유

윤준병·강준현·김우영

민형배・김 현・황정아

박민규 • 조인철 • 노종면

이훈기 • 한민수 의원

(20인)

##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 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재 양 성 속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필요하고 기존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사업 등 정부 주도 하에 교육기관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발굴 및육성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연도별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다.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 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및 제13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 인공지능산업 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개발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함(안 제14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의 인공지능 교육용 ·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장학금·실습비·연구조성비 지급 및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인공지능 교육기관등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기술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의거점기능을 담당할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18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해외인재의 유치를 위하여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주택 구입·신축·임차 등

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된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인공지능, 인공지 능시스템 및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 "인공지능산업 인재"란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 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3.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이란 인공지능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인공지능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인공지능 분야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중 인공지능 분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 다.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인재개발기관등
-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마. 제18조에 따른 지역별 인공지능 거젂대학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 공지능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 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산업 관련 사업자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 공지능산업 인재 육성과 인공지능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5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산업 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 7. 인공지능산업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인공지 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9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등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제18조에 따른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등
  - 3.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 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인재육성센터의 설치 등) ①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 공지능산업 인재육성센터(이하"인재육성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재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4조에 따른 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 육성 활동의 지원
  - 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 의 협력에 관한 업무
  - 3. 국내외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2조(인재육성협의회의 설립 등) ①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협의회(이하 "인재육성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인재육성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인재육성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기금의 관리

- 2. 인재육성협의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3.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4.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 5.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6.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 7. 그 밖에 인재육성협의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인재육성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협의회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재육성협의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 용·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 2. 차입금
  - 3. 수익사업의 이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 2.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또는 대학원 장학금 지원
- 3. 인공지능산업 인재를 위한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4. 인공지능산업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관리를 위한 경비
-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4조(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 능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 육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 인공지능산업 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개발전담부서(이하 "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재개발기관등이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3. 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인재개발기관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6. 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 육성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이 취소된 기업 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인재개발기관등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 제4장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등

- 제17조(인공지능 교육기관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 능산업 인재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기 관등의 인공지능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의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장학금·실습비·연구조성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은 기업 및 인공지능 교육기관등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기술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의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해외교류·연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해외교류·연수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교류·연수사업의 대상자 선정·지원사항·대 상자의 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이하 "해외인재"라 한다)의 안정적인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해외인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

육

- 4. 주택 구입·신축·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 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점검할 수 있다.

제21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

- 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 사 개최
-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제22조(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산 업과 관련된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 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수 있다.
- 제23조(인공지능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국가는 「병역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적 용할 수 있다.
- 제24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제2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 직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원회 위원의 위촉, 인재육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준비 등은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